

건축중인 건물의 공사포기 각서

부동산의 표시

주 소 :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46-2

대지면적 : 242.9 m²

건축면적 : 143.89 m²

연 면 적 : 497.84 m²

주 용 도 : 공동주택{도시형생활주택(단지형다세대주택)}

1. 본인 등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,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기 건축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변경신청을 진행해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.
2. 채무불이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시 공사업체는 즉시 현장에서 장비와 인력을 철수하여야 하며 반입된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등은 현장에 보존해야 한다.
3. 공사업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납된 공사대금 등을 채권자 주식회사 헤라대부중개 (대표자: 한에녹)에게 청구 할 수 없다.
4. 공사업체는 철수하지 않은 장비 등의 유실 및 파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.
5. 상기 현장에 대하여 공사업체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하청업체 또한 유치권을 주장 할 수 없으며, 하청업체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하청업체 별로 제출한다.

2018년 02월 21일

건 축 주 :

주민등록번호 :

시 공 사 :

주민등록번호 :

주식회사 헤라대부중개 귀중